

# 국제법 현안 Brief



국제법 현안 Brief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최태현 교수 (현양대학교)  
 편집위원 오승진 교수 (단국대학교)  
 권현호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김성원 교수 (원광대학교)  
 이기범 교수 (연세대학교)  
 투고문의 ksilbrief@gmail.com  
 웹사이트 www.ksil.or.kr

국제법 현안 Brief는 국제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최근 현안과 관련된 국제법 쟁점에 대한 인식과 최근 국제법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

정 민 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출처: Kota Endo/Kyodo News/AP

### 1. 들어가며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 방류한다는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2022년 10월경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양이 저장탱크 용량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64종의 방사성물질을 제거 또는 저감한다고 알려진 정화장치(‘다핵종 제거시설’ 또는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는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잔류할 수 있어,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서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삼중수소 일부는 체내로 들어와 잘 빠져나가지 않고, 체내 유기화합물과 결합하여 더 오래 머물 수 있으며, 이것이 장기간 축적되면 유전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보도가 있고 난 뒤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방안이 제안되었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가운데 하나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 및 판례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하여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북태평양 해류 순환에 따라 이동·확산될 것이고, 우리나라 주변해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될 사항은 해양환경보호의무의 위반 여부이다.

유엔 해양법협약상 해양 환경보호 관련 규정은 제12부에 규정되어 있다. 분량 면에서 보면, 제12부의 해양환경 보호 규정은 전체 320개의 조문 가운데 45개의 조문에 이른다. 실제적 내용을 보면, 해양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적 의무를 열거하고, 모든 오염원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경감·규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며, 연안국의 법령집행 권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실제 유엔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 관련 사건([표 2] 참조)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유엔 해양법협약 규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유엔 해양법협약 제12부의 해양환경보호규정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총칙 (제12부 제1절)	제192조(일반적 의무) 제193조(천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제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지구적·지역적 협력 (제12부 제2절)	제197조(지구적·지역적 차원의 협력) 제198조(급박한 피해나 현실적 피해의 통고) 제199조(오염 대비 비상계획) 제200조(연구·조사계획과 정보·자료교환)
감시와 환경평가 (제12부 제4절)	제204조(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의 감시) 제205조(보고서 발간) 제206조(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경감·통제 위한 국제규칙과	제207조(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제210조(투기에 의한 오염) 제211조(선박에 의한 오염)

국내 입법 (제12부 제5절)	제212조(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
법령 집행 (제12부 제6절)	제213조(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관련 법령 집행) 제217조(기구에 의한 법령 집행) 제222조(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 관련 법령 집행)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에는 일본에게 사전협의의무, 사전통고의무, 원자력안전기준 준수 의무 등의 국제법상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법적 상황은 사뭇 달라졌으므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근거 보강 및 이에 적용되는 유엔 해양법협약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3. 유엔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

일본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다. 따라서 만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이 동 협약상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한국이나 관련국은 동 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동 협약에 따라 강제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고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소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동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 동 협약 제8부속서에 따른 특별중재재판소가 있다 (동 협약 제287조 제1항).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의 대응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의미한다. 만약 한국이 동 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한다면 국제해양법재판소보다는 동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관할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동 협약 제287조 제3항과 제5항). 일반적으로 일응 분안 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있는 재판소가 이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권도 함께 행사한다(동 협약 제290조 제1항). 하지만 관행적으로 동 협약 제7부속서상의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국가는 해당 재판소가 구성되는 동안 잠정조치를 요청하고, 별다른 합의 노력 없이 2주일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 바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대신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면 그 즉시 해당

재판소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이전에 명한 잠정조치를 변경, 철회 또는 확인할 수 있다(동 협약 제290조 제5항).

유엔 해양법협약 제15부(분쟁의 해결)에 따르면 강제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존재해야 한다(동 협약 제286조와 제288조 제1항). 둘째, 당사국이 선택한 다른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이 있으면 당사국이 선택한 수단에 의해 해결되지 못했어야 한다(동 협약 제280조~제282조). 이는 일방에 의한 갑작스러운 강제분쟁해결절차 개시를 방지하고, 당사국들이 사전에 충분히 분쟁해결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기제이다.

마지막으로 제15부 제3절의 적용배제사유가 없어야 한다(동 협약 제297조 제2항 (a)호 단서와 동조 제3항 (a)호 단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과 관련된 분쟁 가운데에는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에서 자동으로 배제되는 분쟁 유형이 있다. 그리고 제298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배제선언으로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 또는 역사적 만(historic bays) 및 권원 관련 분쟁, 군사 활동에 관한 분쟁 또는 해양과학조사·어업 관련 범집행활동에 관한 분쟁,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에 대해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동 협약 제298조 제1항). 한국은 위에 열거된 모든 유형의 분쟁에 대해 강제분쟁해결절차 배제선언을 한 상태이다.

#### 4. 유엔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판례

그동안 회원국들은 어떤 해양분쟁이 당연히 유엔 해양법협약 제297조~제298조에 따라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 제한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제판례를 보면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룰 수 있도록 강제분쟁해결절차의 관문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에 회부되었던 사건 가운데 일방 분쟁당사국이 상대국의 해양 환경보호 관련 규정 위반사실을 주장한 사건은 모두 5건(소송 계속 중인 1건 포함)으로, 아일랜드와

영국 간 혼합산화물핵연료 재처리공장(mixed oxide nuclear fuel reprocessing plant: MOX Plant) 잠정조치 사건(2001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조호르 해협 간척 잠정조치 사건(2003년), 모리셔스-영국 간 차고스 군도 사건(2015년),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2016년),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흑해 연안국 권리 선결적 항변 사건(2020년)이 있다. 이 가운데 2건은 실제로 중재재판부에서 해당 규정의 위반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표 2]의 남색 부분 참조).

[표 2] 해양환경보호 규정의 위반 주장(당사자) 또는 위반사실 인정(재판부)된 유엔 해양법협약 중재 사건

사건명	위반 주장 또는 위반사실이 인정된 규정	비고
아일랜드와 영국 간 혼합산화물핵연료 재처리공장(MOX Plant) 잠정조치 사건(2001년)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7조, 제206조, 제207조,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7조, 제222조	아일랜드가 영국에게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주장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조호르 해협 간척 잠정조치 사건(2003년)	제192조, 제194조, 제198조, 제200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제210조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에게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주장
모리셔스-영국 간 차고스 군도 사건(2015년)	제194조	재판부가 영국 측의 규정 위반 사실 인정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2016년)	유해 조업 제192조, 제194조 유해 건설 제192조, 제194조, 제197조, 제206조	재판부가 중국 측의 규정 위반 사실 인정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흑해 연안국 권리 선결적 항변 사건(2020년)	케르치 해협 대교 건설 제192조, 제194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세바스토폴 기름 유출 사고 제192조, 제194조, 제198조, 제199조, 제204조, 제205조	소송 계속 중

\* 자료: 해당 판결의 사이트 방문.

위에서 언급한 5건의 해양환경보호 사건을 보건대, 지금은 다년간의 해양법 판례와 경험의 축적으로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소송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일본 측에서 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제297조~제298조의 해석·적용 문제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지만,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일본 측에서 완벽하게 소송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당 사건의 관할권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잠정조치나 본안 단계에서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일본이 방류할 오염수에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언제 방류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분석·예측의 기초가 되는 1차 자료는 모두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은 정화장치를 통해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를 자국 규제기준의 1/40인 1리터당 1,500 Bq(베크렐, 1초 동안 하나의 원자핵이 쪼개질 때 방출하는 방사능 크기) 미만인 될 때까지 바닷물에 희석하여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견 2023년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에 발생할 피해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은 2011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 피해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과는 법적으로 다르게 독립적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 일본이 각 핵종을 배출 기준치 이하로 반복적으로 재처리해도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핵연료가 파손된 상태에서 생성되어, 실제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방사성 핵종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소량의 방사능 물질이라도 바다에 방류되고 나면 회복하기 어렵고, 이는 생태계에 축적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2023년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가 아니라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참고로 2011년 3월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마찬가지로 7등급(가장 심각한 사고 등급)의 국제원자력사고에 해당한다.

## 5. 검토사항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해당 절차의 활용은 본안에 대한 실체적 판단(일본의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 및 국가책임 인정)에 이르기 전이라도 외교적 협상카드(bargaining chip)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대비하되,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병행해 나가야 한다. 강제분쟁해결절차는 한·일 간 협상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 측의 협상력을 높이고, 일 측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국제소송 역량에 대한 점검이다. 한국이 정교한 소송기술로 일본을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잠정조치 또는 본안 판정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그간 한국은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활동과 폐기물 투기로 인해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피소국이 되는 경우만 상정하여 수세적으로 대비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은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강제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기 전, 그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를 예측·관리하고, 향후 한·일 간 해양분쟁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한 주의깊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이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한국과의 영토주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투기 위한 정쟁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6. 나가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동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양자 간 외교를 계속 병행하는 한편, 향후 한·일 간 해양분쟁에의 파급효과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필자 소개 ⋮

**정민정 박사**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국제법 현안 Brief**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한국제법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

\* 이 글은 필자가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23호, 2021.4.23.)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 현안 Brief』의 성격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입니다.